**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계약서**

코잼엔에프티 주식회사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어트랙션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)은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‘본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[목적]
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게임용 소프트웨어(이하 ‘000 게임’이라 한다) 개발 및 공급 업무를 요청함에 있어,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,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신뢰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[계약의 범위]

1. 을은 갑에게 000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한다([별첨 1], [별첨 2]).

2. 본 계약에 따른 000 게임의 공급 기한은 2022년 5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.

3. 계약의 범위는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르며, 별도의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.

제 3 조 [대금 및 지급방법]

1.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금 일억칠천이백오십만원(\172,500,000)(부가세 별도)으로 한다

2.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을 각 단계별 지급방법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.

① 대금의 50%인 금 팔천육백이십오만원(\86,250,000)(부가세 별도)은 본 계약의 체결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. .

② 잔금 50%는 000 게임의 개발이 완료되어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배포(출시 및 배포)된 이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이 발행하여 보유한 CT(갑이 플랫폼 이용 및 기타 거래의 목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토큰) 중 본 계약체결일 당시의 가액인 금 팔천육백이십오만원(\86,250,000)(부가세 별도)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0000개의 CT로 지급한다.

③ 잔금 50% 지급과 관련하여, 위 ②과 달리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, CT가 아닌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일 동안의 평균 거래가액에 0000개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
다만, 평균 거래가액이 본 계약체결일 기준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는 금 팔천육백이십오만원(\86,250,000)(부가세 별도)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
제 4 조 [CT 지급의 보증]

갑은 잔금 50%의 CT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과 [별첨 3]의 COJAM 토큰 약정을 체결한다.

제 5 조 [개발 및 검수]

1. 본 계약의 목적물은 000 게임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하며, 그 범위는 [별첨 1], [별첨 2]의 내용으로 특정된다.

2. 을은 갑이 요청한 000 게임을 개발 및 공급하여야 하고, 갑은 을의 개발완료 통지 또는 검수요청일로부터 7일 내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고, 별도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개발 및 공급이 완료되어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.

3. 검수 완료 후 본 계약물의 목적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, 갑은 즉시 을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갑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4. 갑은 000 게임의 검수에 있어 계약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요구 조건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기일 내에 수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

5. 갑은 위 4.항에 따라 을로부터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검수를 실시한다.

6. 검수가 완료되면 본 계약의 목적물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배포하는 것으로 개발 절차는 종료된다.

제 6 조 [지체상금]

1. 을이 공급 기한 내에 000 게임을 공급하지 않거나 을의 귀책으로 검사에 합격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갑은 을에게 지체일수 1일에 총 대금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2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, 을이 개발을 위하여 갑에게 요청한 자료의 제공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갑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라 개발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한다.

제 7 조 [유지 보수]

1. 000 게임의 하자 중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1년 간 무상으로 유지 및 보수를 한다.

2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, 을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① 새로운 디자인의 추가

② 게임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는 기능의 추가

③ 새로운 기능의 개발

④ QA등 게임의 운영에 관련된 사용자들과의 협력을 위해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

⑤ 기타 본 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개발, 디자인, 인력 투입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, 그 비용의 범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간 협의로 제한될 수 있다.

제 8 조 [게임의 유지, 보수 등 관리]

1. 본 계약의 목적물인 000 게임의 운영주체인 갑은 게임의 유지, 보수 등 관리를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2. 갑이 을에게 000 게임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, 을은 갑에게 관리비용으로 갑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%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3.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 조 [소유권 유보 및 지적 재산권]

1. 본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은 대금이 모두 지급됨과 동시에 갑에게 이전되며, 그 이전까지는 을에게 있다.

2. 갑은 인도된 000 게임에 대하여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하여 을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 및 코드를 요청할 수 있다.

3. 다만, 위 2항에 있어 갑이 제공받은 정보 및 코드를 제3자에게는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0 조 [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]

1.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총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의 선택에 따라 해지일까지 개발된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하고, 소요경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3.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[쌍방의 의무]

1. “을”의 의무

①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.

② 을은 갑의 요청 시 000 게임과 관련한 전산업무에 대하여 갑의 담당자에게 사용자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.

③ 을은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엔지니어를 구성하여 갑의 설치 기간 내에 프로그램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.

④ 을은 전 개발 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, 갑 또한 필요한 사항(자료의 제공, 의사결정 등)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2. “갑”의 의무

① 갑은 본 계약의 내용을 을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을과 협의하여 운영한다.

② 갑은 을이 갑에게 000 게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 하에 제반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.

제 12 조 [비밀 유지]

1.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갑의 문서, 각종 보고서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양도, 복사,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.

2. 을은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1,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,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4. 갑 또한 을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 13 조 [해석]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, 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의 합의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서 결정한다.

제 14 조 [관할 법원]

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

<첨부서류>

[별첨1] P2E게임 개발 견적서 1부

[별첨 2] 게임기획서

[별첨 3] COJAM 토큰 약정서

“갑” 상 호 : 코잼엔에프티 주식회사

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, 4층 423호(여의도동, 파크원)

대표자 : 민 경 애 (인)

“을” 상 호 : 주식회사 어트랙션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, 603호(역삼동, 유니온센터)

대표자 : 유 정 웅 (인)